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1.

발 의 자 : 김진표 · 우원식 · 변재일
김상희 · 김영주 · 전해숙
설 훈 · 고용진 · 박재호
윤호중 · 신정훈 · 김병주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(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함. 이하 같음)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,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여·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, 현행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후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각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하여 상임위원장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

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등이 선출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방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함(안 제5조 및 제15조).

나. 상임위원장등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,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석 수 기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(안 제41조 및 안 제41조의2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첫 임사회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에 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다.

제41조제2항 중 “임시의장”을 “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며, 임시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제41조의2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, 그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제2

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기한 내 미합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) ①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“상임위원장등”이라 한다)의 선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1.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전체 의원 수에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 정수(整數)로 한다. 이 경우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서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전단에 의하여 산출된 값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,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.
2.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호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의 수를 고려하여 상임위원장등으로 추천할 해당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명단과 우선 추천받으려는 상임위원장등의 순위(이하 “우선순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.
3.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 - 가.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신청한 명단 및 우선순위에 따라 각 교섭

단체에 상임위원장등 1명을 추천한다.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.

나.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의 수와 각 교섭단체에 추천된 상임위원장등의 수가 동일할 때까지 가목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그 교섭단체를 제외한 다른 교섭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고 남은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제45조제4항 중 “임시의장”을 “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며, 임시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6항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시회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5조(임시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<u>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</u> <u>후 첫 임시회는 그 임기만료일</u> <u>후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그</u> <u>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</u> <u>날에 집회한다.</u>
제15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	제15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<u>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</u> <u>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</u> <u>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</u> <u>는 그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</u> <u>일에 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</u> <u>시한다.</u>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생 략)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<u>임시의</u>	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의장이</u>

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
에서 선거한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<신 설>

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
에 따라 추천하며, 임시의장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
임기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
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
에는 의장이 제41조의2의 기준
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추천하
고, 그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
일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에 따
른 선거를 실시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
과 같음)

제41조의2(기한 내 미합의 시 의
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)

①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
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
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
에서 “상임위원장등”이라 한다)
의 선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
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다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임
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1.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

임위원장등의 수는 전체 의원 수에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 정수(整數)로 한다. 이 경우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서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전단에 의하여 산출된 값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 하되,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천에 따른다.

2.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호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의 수를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으로 추천할 해당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명단과 우선 추천받으려는 상임위원장등의 순위(이하 “우선순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.

3.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가.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신청한 명단 및 우선순위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등 1명을 추천한다.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추천을 통하여 정한다.

나.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의 수와 각 교섭단체에 추천된 상임위원장등의 수가 동일할 때까지 가목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

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그 교섭단체를 제외한 다른 교섭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고

제45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~ ③ (생략)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<u>임시의장</u>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 ⑤ (생략)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<u>제5항까지</u>, 제48조제1항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	<u>남은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한다.</u> 제45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<u>의장이</u> 각 교섭단체 <u>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추천</u> <u>하며, 임시의장</u>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<u>제6항까지</u>----- -----.
--	--